

'99준계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로공급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국내현안문제
Domestic Issue on the Li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Supplier

함철문, 양명호, 정판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확립된 과정을 살펴 본 다음 그 주요내용으로서 ① 무과실책임론 내지 위험책임주의, ② 책임집중의 원칙, ③ 구상권 제한, ④ 면책사유의 제한 ⑤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⑥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나라의 대북 경수로 공급에 따른 현안문제인 경수로공급자의 배상책임문제에 있어서 제3국인의 제소가능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ogress of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in our country, and describes the general theory relevant to the nuclear liability system. The major subjects of the general theory of this system consist of the following principles in general : ① strict liability for the part of nuclear utility ; ② channelling of liability which means the whole liability is concentrated on the utility ; ③ limit of the recourse right ; ④ limit of immunity ; ⑤ enforcement of financial protection ; ⑥ governmental indemnification. With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as a turning-point,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a new attempt at the nuclear liability system. In relation to the domestic issue on the li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supplier, we checked lawsuit of third party and correspondent options.

I. 대북 경수로의 공급과 배상책임문제

1. 공급배경

북한은 1956년 3월 구 소련과의 “조·소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에 따라 “드브나핵연구소”에 과학자를 파견하였고,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단지를 설치하면서 다음 해인 1963년 소형연구용원자로인 IRT-2000을 도입하였으며, 1987년에는 자력으로 5Mwe급 실험용원자로의 건설 및 가동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구 소련의 권유로 1985년 12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1992년 5월 핵물질 및 핵시설 등 핵사찰 대상목록을 포함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고 수시사찰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IAEA가 1992년 5월부터 1996년 2월까지 6회에 걸친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수시사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신고내용과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즉, 북한은 5Mwe급 실험용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1회의 재처리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수 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양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고대상시설 가운데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영변단지 내의 미신고시설 2개 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이 시설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특별사찰을 거부하였다. IAEA는 1993년 2월 25일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이 1개월 이내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수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로부터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 후 북한은 일련의 미·북회담을 통하여 NPT 탈퇴를 유보한 채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회담에서 미·북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S.A and D.P.R.K)을 채택함으로써 흑연감속로(MAGNOX)의 건설·운동을 중단하고 관련 핵시설도 최종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2003년을 시한으로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미국은 미·북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원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콘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하되 동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에 있어서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범정부기관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이 1995년 1월 23일 통일부(당시 통일원)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1995년 3월에는 한·미·일 주도하에 경수로공급사업의 재원조달 및 원자로 공급을 담당할 국제콘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KEDO)”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하 “공급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KEDO는 1996년 3월 20일 “한국전력공사·KEDO간주계약자지정합의문”의 채택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를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하고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급 가압수형 경수로(한국형표준원전) 2기를 일괄도급방식으로 북한에 유상 공급하되 북한은 각 호기 당 3년 거치 17년 무이자 조건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2.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독점이 끝난 1950년대 초부터 발전용 원자료를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도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인 유럽제국, 일본 및 우리 나라 등에

대하여도 미국과 동일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특히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과 책임제한 및 국가보상)의 확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였던 미국의 숨은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발전용 원자료를 구입하는 외국의 원자력사업자(수입국의 전력회사 등)에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미국의 원자로제작회사들이 원자로의 공급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일본에 원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1956년 가을 미·일원자력협정의 세부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에 면책조항¹⁾의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면책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한, 미국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농축우라늄을 대여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결국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그 해 11월 세부협정을 체결하였다.²⁾ 이어서 1957년 가을 콜더홀(CALDER HALL) 개량형 원자로의 도입에 따른 영·일원자력협정의 교섭 시에도 영국정부 역시 일본정부에 대하여 면책조항³⁾의 삽입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정부는 결국 영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1958년 6월 영·일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로부터 발전용 원자료를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대하여 경수로를 공급하는 경우에서도 북한은 KEDO·북한간의 공급협정 제11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손해와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북한의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의 부담, 책임집중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의 규모가 워낙 방대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넘어 타국에 끼친 원자력손해의 배상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 제3국 피해자의 원자로공급자 등에 대한 직접적 제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북한원전에서의 사고 발생 시 제3국의 피해자들이 북한의 원자력사업자 이외에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원자로공급자에게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전반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원자력손해배상제도

1. 개 요

현대의 고도과학기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기타의 침해는 그 원인, 규모, 태양, 성질 등의 점에서 다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가 없으며, 때로는 불가항력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일반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손해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책

1) 미국정부는 농축우라늄을 일본에 인도한 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본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日本科學技術廳原子力局, 原子力損害賠償制度, 通商産業研究社, 1991, 22면.

3) 제공된 핵연료의 생산, 가공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영국이 핵연료를 인도한 후에는 일본정부가 영국정부 또는 영국원자력공사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대규모 원자력시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엄격한 안전기준의 정비강화에 의하여 사실상 원자력손해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희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에 파국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의 유형에는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가 즉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오랜 기간 침해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만발성 손해⁴⁾도 있다. 이 경우에 원고인 피해자가 원자력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미량의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원자력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고도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산업의 대부분은 인간과 그 환경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과 기준을 초월하여 막대한 손해와 위험을 불가피하게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종합과학기술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과 환경에 인위적 천재지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된 원자력의 산업이용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피해자의 및 원자력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일반공중을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미국은 최초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특수배상제도를 창출하였고 동 제도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 원자력손배상제도의 주요내용

원자력손해는 주로 방사선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도의 과학기술적 지식이 없는 한 가해자(원자력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자력사업자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자력사업은 일반공중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원자력손해의 배상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제도에 의하여 처리될 수도 있으나 원자력손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간접적으로는 원자력사고의 억제)와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②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 ③ 면책사유의 엄격한 제한, ④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⑤ 원자력사업자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손해배상조치(책임보험 등)의 강제 등, ⑥ 배상책임한도액 이상의 원자력손해 발생 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국가보상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가.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원칙으로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방사선피폭에 의한 원자력손해는 대표적인 예이며 원자력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직업피폭은 대부분 만발성(晩發性) 손해이다.

아와는 달리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무과실책임주의는 원래 과실책임주의가 성립된 이후 고도과학문명의 비상한 발달에 따라 고속교통(철도, 자동차, 항공기)이나 위험한 설비를 갖춘 기업이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손해를 창출하면서 종래의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장된 이론이다.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사업분야에서는 거대한 과학기술이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로서 통합되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기인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설비 및 기자재의 기술적 또는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취급하는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과실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추락, 원자력사고 또는 해상유류 오염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원칙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원래 고도의 위험성(inherently abnormally dangerous)을 내포하는 설비, 기자재 또는 물질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이제까지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⁵⁾

무과실책임주의는 각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고속교통기관 등 기타 위험한 기업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예외 없이 무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원자력산업은 그 초기 발전단계에서부터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원자력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자력분야에 관한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없는 한 원자력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이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규정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국제협약에도 도입되었다.⁶⁾ 이와 같이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은 그 과실의 존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이며, 엄격책임주의는 무과실책임, 객관책임(objective liability) 또는 위험책임(liability for risk)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나. 책임집중의 원칙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제3자가 입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배상책임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피해자는 소송상대방을 쉽게 인식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할 경우 기기나 자재 등의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거래의 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원자력산업에의 참여를 주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곧바로 보험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기·자재공급자 등 원자력산업관계자들이 모두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자는 인수의 누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최대인수한도액을 이들 기자재공급자들에게 분할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필요로

5) 幾代通, 不法行爲, 現代法學全集, 筑摩書房, 1977, 4 ~ 6면 참조.

6) 朴基甲, 國境을 넘는 原子力事故賠償責任에 관한 國際條約, 翰林法學 FORUM 제3권(1993), 翰林大學 校 法學研究所, 58면 참조.

하는 손해배상조치액을 현저히 인하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책임집중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일종의 비상수단인 것이다.⁷⁾

3. 구상권의 제한

각국의 원배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킨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사업자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공급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집중의 원칙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② 원자력관련산업계의 보호 및 손해배상조치의 핵심인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누적화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③ 원전의 건설·운영이 진전됨에 따라 핵연료물질 또는 사용후핵연료 등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이 다른 선박이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손해의 발생에는 일반 제3자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가 그들의 과실을 이유로 거액의 구상을 한다면 일반 제3자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구상권의 불행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4. 면책사유의 제한

원자력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원자력손해가 이례적인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쉽게 면책된다면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에 각국은 면책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만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원자력사업자의 면책사유는 일반적인 불가항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할 뿐이다. 이와 같은 책임내용의 엄격성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사업활동에 기인하는 손해의 위험 때문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책임주의의 현저한 표현인 것이다.

5. 손해배상조치(financial protection)의 강제

원자력사업자에게 아무리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더라도 그 이행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별조치를 원배법에서 손해배상조치라 한다.⁸⁾ 이와 같이 특별한 손해배상조치를 통하여 손해배상의 확실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담보한다면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원자력사업자로서도 우발적인 배상부담을 경상적인 보험료 등의 지급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손해배상조치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의 수단으로서는 보험, 자가보험, 정부보증, 공탁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수단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이다. 그리

7) 宮澤南男, [V 傷害新種物保險-新種自動車保險講座(金澤理/西山島梅治/倉澤康一郎編), 日本評論社, 1976, 160면.

8) 日本科學技術廳原子力局監修, 앞의 책, 70면 참조.

고 각국의 보험업자들은 원자력 리스크의 특수성 때문에 원자력보험풀(pool)을 형성하여 원자력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인수규모를 확대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6. 국가보상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기업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늘날 기업시설에서의 대규모 사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을 통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손해가 보험의 통상적 인수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각국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국가보상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기업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늘날 기업시설에서의 대규모 사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을 통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손해가 보험의 통상적 인수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각국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III. 주요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1950년대 말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개시하면서 국내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제도로써 다른 분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미국의 Price-Anderson법⁹⁾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세계 최초의 입법은 미국에서 제정된 1957년 Price-Anderson법으로서 이 법은 당초 10년 기한의 한시법으로¹⁰⁾ 1957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상기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¹¹⁾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1950년대에 들어 미국의 원자력 독점이 끝나면서 자국 원자력관련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일반불법행위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법제도의 창설이 요구되었다.¹²⁾

9) Price-Anderson법은 미국의 원자력법 제170조를 말하며, 이 법안을 제출한 Price 상원의원 및 Anderson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Price-Anderson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손해배상법으로서 그 후 세계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원자력법 제170조는 1957년 원자력법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U.S.Code Citation 42 U.S.C. 2210), Pub. L. 83-703, 68 Stat. 919, 42 U.S.C. 2011 이하 참조.

10) 이 법은 제정 후 1965년에 1977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었고 1975년에 1987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1988년 개정 Price-Anderson법에 의하여 2002년 8월 1일까지 연장되고 있다.

11) 미국에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상은 1975년 법개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1982년 11월 15일 제80번째 원자로의 운전허가가 발급되었을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가. 제정배경

1950년대에 들어 미국의 원자력 독점이 끝나면서 원자력분야에서 외국과의 극심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독점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에 의한 원자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시작하였으며,¹³⁾ 이와 관련하여 1954년에 원자력법을 제정하였다. 1954년 원자력법은 핵물질 및 그 사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을 배제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기술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민간기업은 파멸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은 원자력산업에의 참여를 주저하여왔다. 물론 민간기업의 생각처럼 파멸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민간기업은 기업의 전 재산을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¹⁴⁾ 더구나 중대사고로 인하여 발생될 손해의 규모가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¹⁵⁾ 민간기업은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원자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음을 의회에 표명하였다.¹⁶⁾ 미국 의회는 기존의 연방법 또는 주법만으로도 중대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결국 1957년에 Price-Anderson법을 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나. 입법목적

1957년 제정된 Price-Anderson법의 제정목적은 첫째, 일반시민이 중대원자력사고(severe reactor accident :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특히 민간기업의 원자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⁷⁾ 미국의 원자력법은 “미국 의회가 원자력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공중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복리 및 사회의 방위와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일반공중이 받은 손해의 일부를 전보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손해배상책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제2조 1)”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원자력기술을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도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인 유럽제국, 일본 및 우리 나라 등에 대하여도 미국과 동일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특히,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과 책임제한 및 국가보상)의 확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였다.¹⁸⁾ 즉 이와 같은 요구를 하였던 미국의 숨은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발전용원자로를 구입하는 외국의 원자력사업자(수입국의 전력회사 등)에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미국의 원자로제작회사들이 원자로의 공급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Price-Anderson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현황

1957년에 제정된 Price-Anderson법의 개요는 ① 일반공중의 보호 및 원자력산업의 발달촉진

12) 道垣内正人, 國境を越える原子力損害について, 原子力事故による越境損害の法的救済(JELLR No.54), 日本エネルギー法研究所, 1991. 10, 53면.

13) H.R. 2181, 83rd Cong., 2nd Sess. 2(1954).

14) Government Indemnity : Hearings Before the Joint Comm. on Atomic Energy on Governmental Indemnity for Private Licensees and AEC Contractors against Reactor Hazards, 84th Cong., 2nd Sess., 5(1956)(AEC 위원장 Lewis Strauss의 진술).

15) H.R. Rep. No.435, 85th Cong., 1st Sess. 31 ~ 34(1957).

16) Government Indemnity and Reactor Safety : Hearings on Government Indemnity and Reactor Safety before the Joint Comm. on Atomic Energy, 85th Cong., 1st Sess., 144-57(1957)

17) J. Marrone, US Commission Recommendations(Compensation Plan for Nuclear Catastrophes), An Insurer's Perspective, Nuclear Inter Jura '91, 1991, p. 2,2,6-3.

18) 下山俊次, IV 原子力, 未來社會と法, 現代法學全集 54, 筑摩書房, 1976, 486면.

을 위한 배상재원의 준비와 책임제한, ②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는 원자력사업자의 민간보험을 통한 최대한의 손해배상조치의 확보 및 5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정부보상, ③ DOE 계약자에 대하여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는 손해배상조치의 확보 및 5억 달러의 정부보상, ④ 1 원자력사고당 배상한도액을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액과 정부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원자력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은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은 새로운 원자력기술의 개발에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일단 Price-Anderson법에 의하여 원자력사고에 의한 무한배상책임을 부담만은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국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power reactor operators)는 합리적 조건으로 구입가능한 모든 원자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이 의무화되었으며,¹⁹⁾ 미국 정부는 총액 5억 6000만 달러를 한도로 민간보험과 정부보상으로 배상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다.²⁰⁾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 의회는 일반 공중보호를 위하여 추가자금을 별도로 제공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 결과 피해자 보호와 원자력산업의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 사이에 균형이 달성되었으며 이 법은 1966년, 1975년 및 1988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표 1. Price-Anderson법의 제·개정현황

19) J. Marrone, US Commission Recommendations(Compensation Plan for Nuclear Catastrophes), An Insure's Perspective, p. 2,2,6,-3.

20) 42 U.S.C. § 2210(a) - (b) (1982) ; 42 U.S.C. § 2210(c) - (d) (1982) ; 42 U.S.C. § 2210(e) (1982)
참조. 보험업계는 실제로 발전용원자로에 대하여 6,0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인수하였다.

구 분	인·허가취득자와 관련된 제도 (Licences)	계약업자와 관련된 제도 (DOE Contractor)
195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험인수 능력 한도액 : US\$ 6,000만 ○ 정부보상 한도액 : US\$ 50,000만 (합 계) : US\$ 56,000만 * US\$ 56,000만을 사업자의 배상 한도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상 한도액 : US\$ 50,000만 * US\$ 50,000만을 계약업자의 배상한도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한도액(US\$ 56,000만)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가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책을 강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다만, 배상한도액은 US\$ 50,000만으로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니버스 방식 채택 	
19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례적 원자력사고(ENO)와 관련된 규정 추가 ○ 주불법행위법상의 전통적 항변권 포기 : 출소기간을 10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인수능력의 확대 : 원자력사고시 긴급원조를 위하여 NRC 및 기타 배상자는 이용가능한 재원에서 지불할 수 있다. 	
197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부과방식(retrospective premium assessment)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험한도액 : US\$ 16,000만 - 소급보험료 : US\$ 56,000만 (US\$ 500/기 x 112기 = US\$ 56,000만) (합 계) : US\$ 72,000만 상기 수단에 의하여 배상능력이 US\$ 72,000만으로 되어 정부보상은 폐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례적 원자력사고(ENO)와 관련된 규정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의 공정한 배분제도 확립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부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험한도액 : US\$ 20,000만 - 소급보험료 : US\$705,600만 (US\$6,300/기 x 112기 =US\$705,600만) (합 계) : US\$725,600만 ○ 소급보험료는 연 US\$ 1,000만을 한도로 분할 납부 가능 ○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원자력사고의 경우, 필요조치의 검토를 위한 대통령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 계약자의 배상한도액은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와 동일(좌동). ○ 핵폐기물정책법에 따라 DOE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는 핵폐기물기금에서 전보됨.

2.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가. 제정배경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56년 가을 미·일원자력협정의 세부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미국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면책조항의 삽입을 요구와 1957년 가을 콜더홀(CALDER HALL) 개량형 원자로의 도입에 따른 영·일원자력협정의 교섭 시에도 영국정부 역시 면책조항의 삽입요청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원자력위원회 및 과학기술청 원자력국은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를 간단히 “원자로등규제법”이라 한다.)”의 입안 시부터 원자력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1960년 3월26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의에 제출하였고, 동년 3월29일 각의는 일본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법률(안)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안)을 1961년 3월 1일 제38회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해 5월 18일에는 중의원, 6월 8일에는 참의원에서 각각 양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마침내 6월 17일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법률(법률 제147호)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148호)이 공포되었다. 그 후 정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196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1년의 개정

첫째, 원자력선의 원할한 상호 기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의 원자력선이 외국의 수역에 들어가거나 외국의 원자력선이 일본 수역에 들어올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일정액(360억엔 이상)으로 하며 그 금액까지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정부보상계약제도와 국가의 원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다시 10년간 연장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운전을 개시한 원자로 등의 운전에 적용한다.

셋째, 손해배상조치액을 일본원배법 제정당시의 50억엔에서 60억엔으로 인상한다.

(2) 1979년의 개정

첫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하청종업원은 포함하지 아니함)이 업무상 받은 손해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부칙에서 조정규정을 둔다.

둘째,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 및 국가의 원조를 하기로 한 규정을 개정 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하여 1989년 12월 31일까지 운전을 개시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적용한다.

셋째, 손해배상조치액을 60억엔에서 100억엔으로 인상한다.

(3) 1989년의 개정

첫째, 일본원배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조치액 “100억엔”을 “300억엔”으로 인상한다.

둘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및 국가의 원조에 관한 규정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원자로의 운전 등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적용하기로 한다.

(4) 최근의 개정 움직임

일본은 1997년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 및 1997년 보충기금협약에 따라 국내 손해배상조치액을 현행 300억엔에서 600억엔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3. 우리 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가. 제정배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손해배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원전의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수입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추정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0년 9월에 발주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조치로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1969년 1월 24일 법률 제209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하 “원배법”이라 한다)을 대부분 참조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원배법과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보다 원전 건설에 먼저 착수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도 원자력손해의 특질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이라 한다)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계약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원자력손해에 대처하고 있다.

나. 원자력손해 배상제도의 특색

원배법은 다른 법률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배법의 제정목적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특별법들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의 확보 및 청구절차의 간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배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달”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원배법의 제정배경으로서 다른 법률은 모두가 오랜 세월을 걸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입법화된 것이지만, 원배법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여 미리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창설하였다는 점이다.

다. 원배법의 주요내용

원배법은 원자력손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무과실책임과 면책사유의 제한(제3조 제1항), 책임집중(제3조제2항 및 제3항), 구상권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원배법은 제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원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액은 1 공장 1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척)마다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이다(원배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배상조치액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다

표 2.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조치액(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 관련)

구	분	배상조치액
1.	열출력이 1만Kw 이상인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 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 저장,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60억원
2.	열출력이 100Kw 이상이고 1만 Kw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10억원
3.	열출력이 1 Kw 이상이고 100 Kw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2억원
4.	열출력이 1 Kw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2천만원
5.	- 10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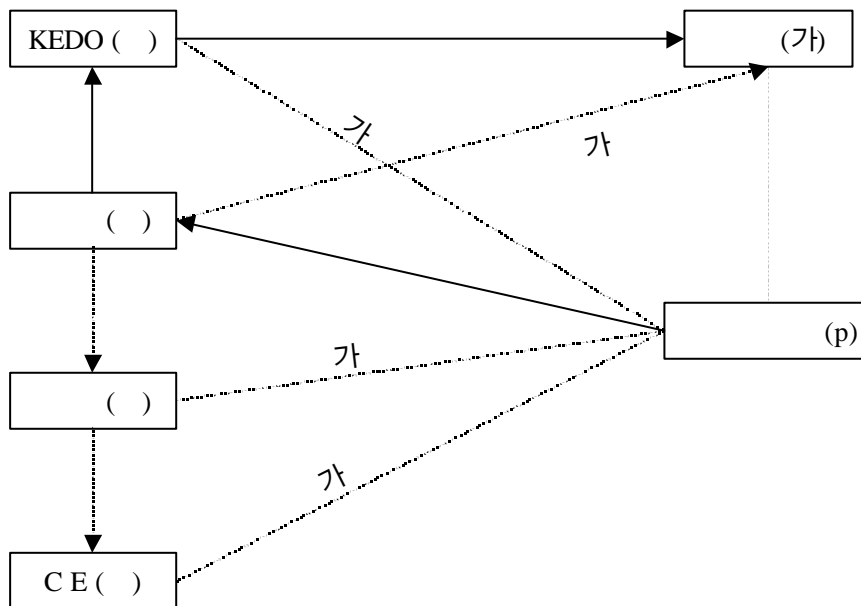
IV. 대북원자로의 공급과 관련한 현안과제 대응방안

1. 현안과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손해배상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의를 끌게 되었으며, 최근 국내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대북 경수로 공급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의 하나가 원자로공급자(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제3국인의 직접적 제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에 의하면 북한의 원전 관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원자력손해는 북한(또는 북한의 원자력사업자)이 부담하며, 북한 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배상책임은 북한의 원자력사업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며, KEDO 및 원자로공급자(한전) 등에 제기되는 제3자의 모든 배상청구에 대하여 북한은 KEDO 및 원자로공급자(한전) 등을 면책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능력이 없거나, 북한이 공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제3국의 피해자들이 KEDO 또는 원자로공급자(한전) 등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제소원인은 주로 원자로공급자 등의 제조물배상책임으로서, 대부분의 외국 피해자는 입증책임이 용이한 제조물배상책임을 이유로 아래 그림의 ㉠ 내지 ㉣ 등을 상대로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품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원자로공급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자력산업 전체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북한 원전에서의 원자력사고 발생 시 외국인의 제소 가능성



2. 제조물배상책임의 개요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 함은 미국에서 발전된 결함 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에 의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배상제도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제조물배상책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나라마다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도의 중심골격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다.”²¹⁾ 오늘날 각종 제조물의 제작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해짐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반소비자 내지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쉽도록 한 것이 제조물배상책임 제도이다.

표 3. 일반불법행위제도와 제조물배상제도의 책임발생요건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고의·과실 ○ 손해의 발생 ○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책임 :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입증 ○ 제조물배상책임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무결함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

V. 결론 및 대응방안

북한의 배상자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북한이 협정의 이행을 준수할 이사가 없을 경우, 원자로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외국 피해자로부터의 배상청구소송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는 원자로공급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한국전력공사의 대응조치

첫째, 제조물배상책임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설계·제조단계에서의 결함의 유형별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부품 및 원자재 등의 결함을 배제하며, 납품단계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제조물배상책임소송대책으로서 제조물책임의 면책을 위한 문서 관리 및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한다.

셋째, 일정 한도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2. 정부의 대응조치

첫째, KEDO와 한전간 계약 시 한전면책조항의 삽입에 최대한 노력하되, KEDO 회원국에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하여 한국이 공급한 북한 원전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한전에 배상책임이 집중될 경우 정부가 한전에 대한 일정 범위의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사후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특칙을 신설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KEDO간의 계약체결 전에 동계약내용 및 문제점에 관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특칙 신설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에 관한 국회의 부대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1997년 비엔나보충기금협약에 가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보충기금은 원전 안전성이 취약한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기존의 비엔나협약을 보완하자는 발전적 사고방식에 따라 창설된 제도이다. 실제로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하여 그 인접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들이 입은 피해는 수 십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수혜자의 입장이기 보다 시혜자의 입장이므로 보충기금협약에의 가입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원자로공급자의 책임을 일부라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북한과 함께 보충기금협약에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1) 하종선·최병복,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2면.

표 4. 보충기금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협약에의 가입 당사국 ○ 체약국의 국내손해배상조치 : 최저 3억S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조치의 이행자 : 체약국의 국내문제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 정부의 지원 등 - 사고 발생 전의 사전조치 ○ 경제상황이 어려운 체약국의 예외적 사전 배상조치 (phasing-in system : 점진적 손해배상조치액 증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 협약의 서명개시일로부터 10년 - 최저배상조치액 : 1,5억S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원자력안전 협약 가입
분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기준 = 300SDR x 원전설비단위 + 3,000만SDR x 체약국의 UN분담비율 * 1 원전설비단위 = 1MW ○ 분담금액 = 17,700 x 300SDR + 3,000만SDR x 0.01 = 5,610,000SDR ○ 5,610,000SDR = 5,610,000 x 1.3\$ x 1,200원 = 약 87.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설비단위 : 울진 6호기 운전예정일인 2005.6의 전기출력 기준 ○ 1SDR = 1.3\$ ○ 1\$ = 1,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액 = 200 x 300SDR + 3,000만SDR x 0.001 = 90,000SDR ○ 90,000SDR = 90,000 x 1.3\$ x 1,200원 = 약 1.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분담율 : 한국의 10분의1로 가정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기금의 발동조건 :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후 배상금액이 3억SDR을 초과한 경우 ○ 기금각출 : 사고발생 후 상기 방식에 따라 징수 ○ 사용방식(보충기금 3억S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억 SDR : 국내 및 국외피해자에게 지불 - 1.5억 SDR : 국외피해자에게만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란은 원자력손해가 6억SDR 이상인 경우를 가정 - 3억SDR:국내조치 - 3억SDR:보충기금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현행법체제 하에서 3억SDR(약 4,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조치(현재 : 원전 1기당 60억원의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원자력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예상됨 ○ 북한 : 1.5억 SDR 규모의 국내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원자력손해 배상체제의 구축 필요 - 미국의 배상제도 도입 고려